|  |  |  |
| --- | --- | --- |
|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 신고방법**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령 제48호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 신고방법》은 2012년 3월 6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국장집무 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2009년 9월 8일 공포한 《업무장소 직업 위해 신고관리방법》은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뤄린(骆琳)  2012년 4월 27일  **제1조**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 신고업무를 규범화하고, 고용단위의 직업위생 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치료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고용단위(탄광 제외) 업무장소에 직업병 목록에 나열된 직업병 위해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신속히 사실대로 소재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 위해 프로젝트를 신고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탄광의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 신고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칭하는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는 직업병 위해 요소가 존재하는 프로젝트를 가리킨다.  직업병 위해 요소는 《직업병 위해 요소 분류목록》에 따라 확정한다.  **제4조**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 신고업무는 속지분급(属地分级) 관리의 원칙을 시행한다.  중앙기업, 성(省)직속 기업 및 해당 소속 고용단위의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는 소재지에 설치 된 시급 인민정부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 신고한다.  전관 규정 이외의 기타 고용단위의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는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 신고한다.  **제5조**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 신고 시, 고용단위는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 신고표》와 아래 문건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고용단위의 기본현황  (2) 업무장소 직업병 위해 요소의 유형, 분포현황 및 접촉인원수  (3) 법률, 법류 및 규장에 규정된 기타 문건, 자료.  **제6조**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 신고와 동시에 전자데이터 및 페이퍼문건 2가지 방식을 취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우선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 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데이터 신청을 진행하고, 이와 동시에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 신고표>>에 공장(公章)날인 및 본 단위 주요책임자 서명을 한 후 본 방법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근거하여 유관문건, 자료와 함께 소재지에 설치된 시급, 현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 제출한다.  신고를 수리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신고문건과 자료를 접수한 일로부터 5일 업무일 이내에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 신고 수령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7조**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 신고 시 어떠한 비용도 수취해서는 안 된다.  **제8조** 고용단위가 아래 상황에 부합될 경우 본 조 규정에 근거하여 기존 신고기관에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 내용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1) 신설, 재건, 증축, 기술개조 또는 기술도입 건설프로젝트일 경우, 건설프로젝트 준공검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2) 기술, 공법, 설비 또는 자재 등의 변화가 발생하여 기존에 신고한 직업병 위해 요소와 유관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변화가 발생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다.  (3) 고용단위의 업무장소, 명칭,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변화가 발생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다.  (4) 직업병 위해 요소의 검측, 평가를 거쳐 기존에 신고한 내용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유관 검측, 평가 결과를 받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다.  **제9조** 고용단위가 생산경영 활동을 중지하는 경우, 생산경영 활동 중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존 신고기관에 보고를 하고 말소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0조** 신고를 수리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의 관리당안을 구축해야 한다.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의 관리당안은 관할구역내 직업병 위해 요소가 존재하는 고용단위수, 직업병 위해 요소 유형, 업종 및 지역분포, 접촉인원수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11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고용단위의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 신고현황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제12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 및 해당 업무인원은 고용단위의 상업기밀과 기술기밀을 지켜야 한다. 유관 기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13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위법행위 신고제도를 건립하여 완비하고, 법에 의거하여 유관 고용단위가 본 방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를 수리 및 조사한다.  모든 단위 및 개인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 고용단위가 본 방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4조** 고용단위가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신속히, 사실대로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기한개정을 명령하고, 경고 처분을 내리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15조** 고용단위의 유관사항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의 내용을 변경신고 하지 않은 경우 기한개정을 명령하고, 5천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16조**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 신고표》, 《직업병 위해 프로젝트 신고 수령증》의 양식은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규정한다.  **제17조** 본 방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2009년 9월 8일 공포한 《업무장소 직업 위해 신고관리방법》은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 |  | **职业病危害项目申报办法**  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令第48号  《职业病危害项目申报办法》已经2012年3月6日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局长办公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2年6月1日起施行。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2009年9月8日公布的《作业场所职业危害申报管理办法》同时废止。  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 骆琳  二○一二年四月二十七日  **第一条** 为了规范职业病危害项目的申报工作，加强对用人单位职业卫生工作的监督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制定本办法。  **第二条** 用人单位（煤矿除外）工作场所存在职业病目录所列职业病的危害因素的，应当及时、如实向所在地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申报危害项目，并接受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的监督管理。  煤矿职业病危害项目申报办法另行规定。  **第三条** 本办法所称职业病危害项目，是指存在职业病危害因素的项目。  职业病危害因素按照《职业病危害因素分类目录》确定。  **第四条** 职业病危害项目申报工作实行属地分级管理的原则。  中央企业、省属企业及其所属用人单位的职业病危害项目，向其所在地设区的市级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申报。  前款规定以外的其他用人单位的职业病危害项目，向其所在地县级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申报。  **第五条** 用人单位申报职业病危害项目时，应当提交《职业病危害项目申报表》和下列文件、资料：  （一）用人单位的基本情况；  （二）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种类、分布情况以及接触人数；  （三）法律、法规和规章规定的其他文件、资料。  **第六条** 职业病危害项目申报同时采取电子数据和纸质文本两种方式。  用人单位应当首先通过“职业病危害项目申报系统”进行电子数据申报，同时将《职业病危害项目申报表》加盖公章并由本单位主要负责人签字后，按照本办法第四条和第五条的规定，连同有关文件、资料一并上报所在地设区的市级、县级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  受理申报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自收到申报文件、资料之日起5个工作日内，出具《职业病危害项目申报回执》。  **第七条** 职业病危害项目申报不得收取任何费用。  **第八条** 用人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按照本条规定向原申报机关申报变更职业病危害项目内容：  （一）进行新建、改建、扩建、技术改造或者技术引进建设项目的，自建设项目竣工验收之日起30日内进行申报；  （二）因技术、工艺、设备或者材料等发生变化导致原申报的职业病危害因素及其相关内容发生重大变化的，自发生变化之日起15日内进行申报；  （三）用人单位工作场所、名称、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发生变化的，自发生变化之日起15日内进行申报；  （四）经过职业病危害因素检测、评价，发现原申报内容发生变化的，自收到有关检测、评价结果之日起15日内进行申报。  **第九条** 用人单位终止生产经营活动的，应当自生产经营活动终止之日起15日内向原申报机关报告并办理注销手续。  **第十条** 受理申报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建立职业病危害项目管理档案。职业病危害项目管理档案应当包括辖区内存在职业病危害因素的用人单位数量、职业病危害因素种类、行业及地区分布、接触人数等内容。  **第十一条**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依法对用人单位职业病危害项目申报情况进行抽查，并对职业病危害项目实施监督检查。  **第十二条**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及其工作人员应当保守用人单位商业秘密和技术秘密。违反有关保密义务的，应当承担相应的法律责任。  **第十三条**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建立健全举报制度，依法受理和查处有关用人单位违反本办法行为的举报。  任何单位和个人均有权向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举报用人单位违反本办法的行为。  **第十四条** 用人单位未按照本办法规定及时、如实地申报职业病危害项目的，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可以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第十五条** 用人单位有关事项发生重大变化，未按照本办法的规定申报变更职业病危害项目内容的，责令限期改正，可以并处5千元以上3万元以下的罚款。  **第十六条** 《职业病危害项目申报表》、《职业病危害项目申报回执》的式样由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规定。  **第十七条** 本办法自2012年6月1日起施行。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2009年9月8日公布的《作业场所职业危害申报管理办法》同时废止。 |